

기타 주요경영사항

1. 제출사유 : 정관 일부 변경

2. 주요내용 :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 2 조 [목적]</p> <p>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인가 또는 등록 등을 완료한 업무단위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(전문사모집합투자업 포함) 2. 투자매매업 3. 투자중개업 4. 투자자문업 5. 투자일임업 6. 신탁업 7. 일반 사무관리회사업 8. 경영컨설팅 9.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 업무 10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<p>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, 상표권 등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2.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, 판매 업무 3.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업무 4. 부동산 매매, 임대 및 개발업 5. 콜거래 업무 6. 어음매입 업무 <p>③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, 등록하여 영위할 수 있다.</p>	<p>제 2 조 [목적]</p> <p>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인가 또는 등록 등을 완료한 업무단위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(전문사모집합투자업 포함) 2. 투자매매업 3. 투자중개업 4. 투자자문업 5. 투자일임업 6. 신탁업 7. 일반 사무관리회사업 8. 경영컨설팅 9.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 업무 10. <u>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 (추가)</u> 11. <u>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업무 및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(변경)</u> <p>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, 상표권 등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2.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, 판매 업무 3.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업무 4. 부동산 매매, 임대 및 개발업 5. 콜거래 업무 6. 어음매입 업무 <p>③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, 등록하여 영위할 수 있다.</p>

3. 결정(발생)일자 : 2026.03.20
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